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2.

의안 번호	94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 안 이 유

현행 불법 주차 견인료 20,000원(승용차등 소형차량1대기준)은 '91년도 조례제정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견인차량 운영비는 늘어 난데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여 견인업체의 견인업무 대행기피로 견인차량을 자체 보유 하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타시·군은 견인 업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민간업체가 견인업무 대행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 효과를 거양하고 기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 추진 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함

2. 주 요 골 자

가. 견인료 인상

- 별표제1호중 기본요금의 2.5톤 미만 '20,000원' 을 '30,000원' 으로
-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을 '35,000원' 으로
- 6.5톤 이상 '40,000원' 을 '50,000원'으로 인상

나. 불명확한 용어 정비

- 별표제1호중 '기본요금(편도5km까지)'를 '기본요금(10km까지)'로하고 '추가요금(매km증가시)'을 '추가요금(매1km증가시)' 로하며
- 별표제2호중 '1회주차권'을 삭제함

3. 내 용 : 붙임(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사전예고결과 :이견없음(도보1866호, '96. 1. 12)

9. 기타참고 자료 : 붙임(관계법령 발췌, 기타참고사항)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제1호중 기본요금의 2.5톤 미만 '20,000원'을 '30,000원'으로,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을 '35,000원'으로, 6.5톤 이상 '4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기본요금 (편도5km까지)'를 '기본요금(10km까지)'로하며 '추가요금(매 km증가시)'을 '추가 요금 (매1km증가시)'로 한다.
- 별표제2호중 '1회주차권'을 삭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